

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

제정	1999. 5. 26	조례 제 219호
개정	2002. 1. 9	조례 제 375호
	2002. 5. 17	조례 제 389호
	2003. 6. 13	조례 제 443호
	2004. 6. 12	조례 제 512호
	2005. 5. 21	조례 제 578호
	2005. 6. 30	조례 제 597호
	2005. 10. 5	조례 제 626호
	2006. 1. 11	조례 제 792호
	2009. 10. 13	조례 제1046호
	2010. 1. 12	조례 제1067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용인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5. 10. 5]

제2조(법인) 용인시 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은 법인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5. 10. 5]

제3조(사무소)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공단은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4조(자본금) ① 공단의 자본금(이하 “자본금”이라 한다)은 10억원 이내로 하고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전액 출자한다.

② 제1항의 출자는 현금 및 현물로 하되 출자의 금액,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.

제5조(정관)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자본금에 관한 사항
5. 사업에 관한 사항
6. 임·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7.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
8. 이사회에 관한 사항
9.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
10. 공고에 관한 사항
11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
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6조(등기)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제2장 임원 및 직원

제7조(이사장)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<개정 2005. 10. 5, 2010. 1. 12>

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시장은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.

제8조(이사)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,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,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 1. 12>

②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며,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<개정 2010. 1. 12>

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관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

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감사)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,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 1. 12>

②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며,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<개정 2010. 1. 12>

③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.

제10조(이사회) ① 공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,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.

③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 다만,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.

④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,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⑤ 감사는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 1. 12]

제11조(임·직원의 겸업금지)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,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제12조(비밀누설의 금지)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(임·직원의 임면)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,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,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.

② 임원의 임기 연임시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

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.

[전문개정 2010. 1. 12]

제13조의2(임원추천위원회)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되,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6조의3에 의한다.

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0. 1. 12]

제3장 삭제 <2002. 10. 4>

제14조 삭제 <2002. 10. 4>

제15조 삭제 <2002. 10. 4>

제16조 삭제 <2002. 10. 4>

제17조 삭제 <2002. 10. 4>

제4장 사업

제18조(사업)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·운영
2. 문화예술시설의 관리·운영 및 영화상영업 <개정 2006. 1. 11>
3. 체육시설관리운영(체육·문화·복지 등 복합시설 포함) <개정 2009. 10. 13>
4. 시장이 지정하는 유료주차장의 시설 관리·운영
5. 다목적복지회관시설의 관리·운영
6. 시장이 지정하는 “주정차 금지구역”에서의 위반차량의 견인과 견인차

량보관소 관리

- 7.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
 - 8. 공중화장실시설의 관리
 - 9.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사업 <신설 2009. 10. 13>
 - 10. 제1호 내지 제9호의 부대사업 <개정 2009. 10. 13>
- [전문개정 2005. 6. 30]

제19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① 공단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상호위탁 계약에 의한다.

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0. 1. 12>

④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의 세입으로 한다.

제5장 재무회계

제20조(사업년도) 공단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

제21조(예산) ①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년도 개시 35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. 또한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5. 21>

②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,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

의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〈신설 2005. 5. 21〉

④ 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 의 결의결을 받아야 한다. 〈신설 2005. 5. 21〉

제22조(결산) ① 공단은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5. 5. 21〉

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23조(계리의 원칙)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하여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.

제24조(비용부담)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공단으로부터 업무를 제공 받은 자에게 그 위탁업무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업무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제25조(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(“물품”을 포함한다)을 무상대부(“무상사용수익”을 포함한다)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6장 감독

제26조(감독)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한다.

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 결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
2. 임원 및 직원의 급여,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
3.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7조(보고 및 검사) 시장은 공단의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.

제7장 보칙

제28조(권한의 위탁)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29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〈개정 2010. 1. 12〉

제30조(경영평가) ① 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.

1. 법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법인
2. 경영평가 전문기관
3. 회계법인
4. 기타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

제3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권리의무의 승계) 공단은 이 조례의 시행 후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된 시출자 및 관리위탁자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.

제3조(예산의 경과조치)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

의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③ 설립년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4조(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) 공단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단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2002. 1. 9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2. 5. 17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3. 6. 13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4. 6. 12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5. 2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6. 3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26호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6. 1. 11 조례 제79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. 10. 13 조례 제104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1. 12 조례 제106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